

요 약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함. 최근에는 업무상 지위나 지식을 이용하는 사례 및 브로커 조직이나 사무장병원에 의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보험사기의 특성(복합성, 다양성, 지능화·조직화)을 고려할 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영역별 대응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역할을 확대하며, 브로커조직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선제적·실효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 정비 및 내용 확충이 요구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액 보험사기도 늘어나고 있음

-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48억 원) 증가하였음¹⁾
 - 적발금액은 손해보험 8,879억 원(94.1%), 생명보험 555억 원(5.9%)으로 손해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임
 -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198억 원, 44.5%) 및 장기보험(4,319억 원, 45.8%)에 집중되어 있음
-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다소 감소한 반면, 1건당 편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은 상당히 증가하였음
 -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0년 98,826명에서 2021년 97,629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 편취액 1천만 원 초과 건은 2020년 6,646억 원(15,213명)에서 2021년 6,988억 원(17,452명)으로 342억 원(2,239명) 증가하였음

○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다양한 산업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복합성)** 보험사기는 형사 범죄인 사기죄의 일종으로 수사·기소·처벌 대상이고(형사),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반환 청구 대상이며(민사),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대상임(행정)
 - 분야별로 보험사기 대응조치의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핵심 사항임
- **(다양성)** 보험사기는 운수업, 제조업, 자영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며, 의료, 자동차, 여행, 골프 등 개인

1) 이하 보험사기 관련 통계는 금융감독원(2022. 4. 13)의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참조함

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1년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 분야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89억 원에 이르고,²⁾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장에 방화를 하는 등 제조업·자영업 부문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³⁾
- 병원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사기, 자동차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가 빈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 중 물품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거나,⁴⁾ 휴인원을 하였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휴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⁵⁾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능화·조직화)** 특정 분야의 업무상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 및 브로커조직,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병원 종사자 적발인원은 2020년 944명에서 2021년 1,457명으로 513명(54.3%) 증가하였고, 정비업소 종사자 적발인원도 2020년 1,138명에서 2021년 1,699명으로 561명(49.3%) 증가하였음
- 합법적인 마케팅 업체를 가장한 브로커조직이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⁶⁾ 및 사무장병원 허위 입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⁷⁾

○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합성)**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 형사·민사·행정 분야의 요건 및 절차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형사·민사 연계방안) 보험금 환수권을 도입하여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시 민사상 보험금 반환 청구 요건의 입증 및 절차를 간이화하고, 소멸시효(5년) 도과로 보험금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형사·행정 연계방안)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⁸⁾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다양성)**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등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산업 분야의 경우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은 물론 해당 산업 분야 주무부처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는 자보진료수가를 허위·과장 청구한 병원 및 정비요금을 부풀린 정비업자에 대해 자배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및 제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바,⁹⁾ 이러한 대응

2) 자동차손해배상전환원 보도자료(2022. 5. 25),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적발금액 2년 만에 2.5배 증가”

3) 회사대표가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퇴근하여 방화죄 실행을 신고받은 사례가 있음(중도일보(2022. 5. 1), “공장에 점화장치 설치하고 퇴근한 대표…보험금 노린 방화 ‘실행’”

4) KBS News(2022. 6. 6), “해외서 분실했다더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여행자보험 사기 백태”

5) 연합뉴스(2022. 5. 31), “‘휴인원 했어요’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사기 친 40·80대”

6) 금융감독원(2022. 1. 26), “브로커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7)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 입원 보험사기의 70%가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금융감독원(2021. 9. 30),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8) 현재는 보험업법 및 금소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모집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보험업법 제84조), 여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9) 금융감독원(2022. 5. 31), “허위·과다입원 가짜 환자 근절 나선다”

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 (실손의료보험)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무장병원 및 브로커조직과 결탁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획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능화·조직화)** 브로커조직이 일반인의 보험사기 가담을 유인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사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대응) SNS를 이용하거나 홍보·마케팅을 가장한 보험사기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기 유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후대응)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민간보험금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 적정성 심사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비용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¹⁰⁾

- **(종합적 대응)**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은 복잡성·다양성을 띠는 보험사기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수사기관, 감독당국은 물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선제적 대응)**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행위 처벌 및 게시물 삭제 요청권 등은 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생각됨
- **(실효적 대응)** 환수권 도입,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방안은 보험사기 적발 및 사후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을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사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보험사기에 관한 대책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임

10) 황현아·손민숙(2022. 4. 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보험법리뷰』